

김준한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구환경과 국제통상

66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기준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

77

I. 서 론

1972년 UN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던 지구환경보호문제가 최근에 들어와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협약의 체결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동협약에 따른 몬트리올의정서, 지구온난화현상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방지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생물학적 다양성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1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협약들은 적용대상부문을 구체화하여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이행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별로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국들에게 포장지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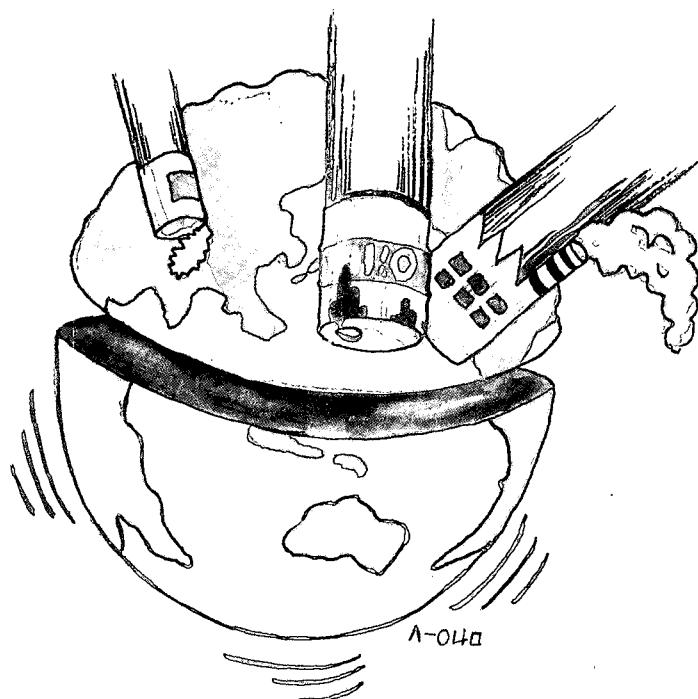
한편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EC의 경우 회원국별로 상이한 환경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미무역자유지대(NAFTA)를 형성하기로 한 북미 3개국중 미국과 멕시코간에는 환경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격차분을 관세화하는 문제가 최대쟁점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조치들은 그 형태가 국제협약이든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규제이든

II. 환경과 통상마찰의 특성과 예

환경과 관련하여 통상마찰을 빚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국가가 교역상대국에 대해서도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데서 비롯되는 분쟁을 들 수 있는데 요구근거로는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상대적인 생산비가 증대됨에 따라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



결국 모든 국가의 국내산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국제무역패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우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기준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제2의 UR협상대상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전형적인 예로서 미국의 개정된 대기정화법 시행을 둘러싼 미국과 대미자동차수출국간의 마찰과 북미자유무역지대형성에 따른 환경부문에서의 미국과 멕시코간 마찰을 들 수 있다.

둘째, 역으로 환경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가 보다 엄격한 국가에 대해 환경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데서 비롯되는 마찰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을 앞두고 있는 EC역내에서 회원국간에 자주 빚어지고 있다. 완전한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각국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지역의 수준에 맞추어 설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즉 EC역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가장 엄격한 독일의 루로지방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포르투갈 전원지대에 위치한 공장들은 거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며 포르ту갈 수준에 맞추게 되면 독일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게 된다.

1. 미국의 개정 대기정화법

미국의회는 산성비,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유해가스의 배출, 오존층의 파괴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개정안을 1990년 10월 통과시켰다. 1970년 이후 3번째로 개정된 이 법안에 의하면 1991년까지 질병을 유발하는 41종의 유해가스배출원에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 후 2003년까지는 적용대상을 250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오존층 파괴하는 유독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1995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15% 감축시키고 2000년까지는 20% 줄인다는 목표하에 저공해 및 개량형 휘발유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과 연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1992년 9월부터는 탄화수소, 그리고 1996년부터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997년 9월부터는 무공해차량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동개정법에 의거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는 공해검사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차량, 선박 등의 내연기관과 일반기계에 대한 감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업계는 매년 250억달러씩의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경쟁력 약화방지와 효율적인 환경규제를 위해 동법률 811조에서는 교역상대국에도 동일한 대기오염방지 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시행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 법률로 인해 미국기업이 받게 될 국제경쟁력상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교역상대국과 협의하며 상대국으로 하여금 동법안을 적용받도록 하게 할 전략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미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률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은 이 법이 시행된지 18개월이 되는 금년 5월부터는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덴마크의 음료용기 회수제도

1981년 덴마크에서는 맥주와 음료용기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예탁금징수와 회수계획의 수립을 주 내용으로 한 용기회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예탁금징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나 덴마크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맥주 및 음료제조회사가 용기를 회수하는 장소와 서비스를 갖추어야 하고 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더우기 용기는 재이용가능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재이용이란 한번 사용한 용기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수된 용기를 용해하여 다시 용기로 만드는 재생과 구분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덴마크에서는 맥주 및 음료용기로 알루미늄캔이나 종이팩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용기는 유리병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제조회사는 회수제도가 완전하며 일정비율 이상의 용기가 실제로 재이용되고 있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고 재이용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용기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덴마크의 음료용기 회수제도 도입에 따라 여타 국가들이 덴마크에 맥주나 음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환경청이 승인한 형상과 소재로 만든 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공병의 회수를 위한 장소 및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들 국가들의 대덴마크 음료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덴마크를 제외한 여타 EC회원국들은 덴마크의 음료용기회수제도가 덴마크 이외의 음료제조업체들에 대한 무역차별로서 자유무역을 규정한 로마조약 30조에 위배된다고 EC위원회에 항의하게 되었다. EC위원회는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여 덴마크정부에 대해 동제도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덴마크정부가 법률의 부대조항중 일부를 수정하는데 그 침으로써 1986년 동전을 구주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다. 구주재판소는 1988년 9월 덴마크의 음료용기회수제도는 무역장벽으로서 로마조약 30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동제도가 국내제조음료와 수입음료에 동등하게 적용됨으로써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선언

하였다. 이로써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건 EC역내에서도 환경보호가 자유무역에 우선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후 1988년 12월 서독도 덴마크와 유사한 강제예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독일의 포장폐기률 규제

독일은 1991년 6월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포장폐기물의 회수의무를 규정한 「포장폐기물의 억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이 규정한 회수대상포장에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가 상품의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운송용포장,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용포장, 그리고 판매용포장을 다시 포장하기 위한 재포장등이 포함된다.

이 법령에 의하면 상품판매자는 판매장소나 인접구역에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포장폐기물을 무료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된 포장폐기물을 공공폐기물처리장이외의 장소에서 재이용 또는 재생 가능하도록 처리하거나 생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생산자는 반환된 포장폐기물을 역시 공공폐기물처리장이외의 장소에서 재이용 또는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후에 판매자 및 생산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포장폐기물의 회수의무외에도 음료, 세제, 스프레이식 도장용기 등에 대한 예탁금방식의 회수제도와 플라스틱용기의 예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업자 및 판매자가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의무와 예탁금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령에 의거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운송용포장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는 91년 12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재포장회수의무는 금년 4월부터, 판매용포장 회수의무 및 음료용기의 예탁금제도는 93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같은 독일의 폐기물 규제는 가전제품에도 과급되어 폐가전제품에 대한 법령안이 93년 실시를 목표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폐자동차에도 확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 증가요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제환경문제는 국제협약외에도 개별국가들에 의한 자국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효율적인 공해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기분야와 같이 국제환경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분야도 있는 바 이 시점에서 국내의 산업동향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추이에 비추어 기설정된 국내환경기준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장·단기별 적정환경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증액과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NP대비 환경예산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1/5수준인 0.2%에 불과하고 민간기업들의 공해방지시설투자비율도 선진국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전에 공해방지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지금은 노후설비에 대한 대체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들은 환경규제강화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란 차원에서 공해방지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에는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비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체결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서두르고 아울러 국내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기업들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입시에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상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